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이태훈 의원 등 8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약사법」 및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심야 시간대 도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명확화, 운영시간 규정 신설(안 제3조제2, 3항)

다. 법령에 따른 지정 취소사유 반영 및 재지정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

5. 검토내용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최근 「약사법」 및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충청북도 공공
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 의약품 구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제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조례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개정안은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이 유지됨.
-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와 비교했을 때도 합리적인 수준이며, 중앙정부의 공공 보건 정책과도 일관성을 가짐.
- 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2조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안 제3조는 제2, 3항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안 제7조는 지정 취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지정 취소사유를 반영하고, 재지정 제한 규정을 신설함.
-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5. 3. 6.~'25. 3. 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다.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심야시간대(오후 8시~다음 날 오전 1시) 및 공휴일 개념을 조문에 명확히 정의하여 행정적 혼선을 방지함.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일일 최소 3시간 이상’ 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 사업 운영 방식 및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법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며, 지역 차원의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